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 가 연 구 개 발 혁 신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·체계적 관리와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국가R&D 사업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 시행령을 공통 적용하되 인문·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일부 연구분야 및 사업에 대해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·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규정을 명확화하고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법률 제18725호, 2022. 1. 6. 개정, 2022. 3. 1. 시행)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, 법 개정사항 및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

또한, 현행 시행령에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기술료 징수의 감면 사유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법률 제18645호, 2021. 12. 28. 개정, 2022. 6. 29. 시행)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,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유를 삭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적용 범위(안 제5조)

- 1)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 받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시할 때에 관계부처인 ‘교육부장관’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

나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(현행 제20조제2항 및 별표3 삭제)

- 1) 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, 시행령상 규정을 삭제함

다. 기술료 등의 감면(현행 제40조제1항 삭제)

- 1)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 사유를 삭제함

라.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(안 제43조제1항)

- 1)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게 할 경우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의무를 규정함

마.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(안 제62조 제1항~제2항)

- 1)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, 시행령에서도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

바.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·기록·관리 및 활용 촉진

(안 제65조)

- 1)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·관리에 관한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, 과학기술 외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지침·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2. 1. 13. ~ 2022. 2. 3.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다른 법률과의 관계)”를 “(적용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3호”를 “법 제3조 제7호”로,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을 “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7호 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등록·공개”를 “공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따라 등록·공개되는”을 “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등록 및 공개되는”으로 한다.

제65조의 제목 “(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 및 활용 촉진)”을 “(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·기록·관리 및 활용 촉진)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,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·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를 위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·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약에서 정하여야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
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법 제4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	제5조(적용범위) 법 제3조 제7호- ----- ----- ----- --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“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”이라 한다)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. ③·④ (생략)	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≤삭 제> ②·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 ≤삭 제>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
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
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연구개발성과

2.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
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
과

② (생략)

제43조(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
이용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
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
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<단서 신설>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62조(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
공개)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
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·공
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

①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43조(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
이용) ① -----

다
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법 제3조제7호 사업에 대해 통
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
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
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
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
공개) ① -----
----- 공개-----
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·공개되
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
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5조(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 및
활용 촉진) ① 연구개발기관의
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
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자
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
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
따른 자체지침을 마련·운영하
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
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
다.

<신설>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등록
및 공개되는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5조(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
성과 작성·기록·관리 및 활용
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
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
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
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
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
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
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연
구노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
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
항과 관련하여, 연구노트의 작
성·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
·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
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

<신 설>

은 제1항의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를 위한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 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·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약에서 정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53